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258호 2017. 4. 17(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4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----- 1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
입법예고 ----- 3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----- 11

### 규 칙

-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1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 
일부개정규칙 ----- 14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7 - 40호

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4. 10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고 시 일 : 2017. 4. 10.
2. 고시방법 : 구보, 홈페이지, 게시판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 
(붙임 조서와 같음)
4.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<b>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</b>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	신청을 받은 날부터 ⇒ 10일 이내	<b>주민 의견 수렴 공고</b> 14일 이상	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<b>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</b>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	심의 마친 날부터 ⇒ 10일 이내
<b>공고 및 신청인 통보</b>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	공고한 날부터 ⇒ 30일 이내	<b>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</b> 주소사용자의 1/2 이상	동의 얻은 날로부터 (동의 생략 포함) ⇒ 10일 이내	<b>고시 및 신청인 통보</b>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	동의 만료일부터 ⇒ 10일 이내
		<b>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</b> 주소사용자의 1/2 이하	동의 만료일부터 ⇒ 10일 이내	<b>공고 및 신청인 통보</b> 결과 통보	

※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

※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
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(☎032-560-48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

연번	도로구분	예비도로명	기 점		종 점		제 원		기초간격 (m)	관할 행정구역	도로명 부여사유
			읍면동	지번	읍면동	지번	길이(m)	폭(m)			
1	로	탐구로	경서동	542-9	경서동	541-11	900	30	20	청라3동	두개의 학교가 도로 양측에 위치하여 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의미 반영
2	로	세계로	경서동	528-32	경서동	528-41	500	20	20	청라3동	청라국제도시가 세계로 전진하라는 뜻으로 발전의 의미 반영
3	로	에코남로	경서동	528-24	경서동	528-40	160	20	20	청라3동	에코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8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○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



##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- 531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4. 17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 법 예 고

### 1. 개정 이유

- 생활임금 조례 조항중 생활임금 상한액이 제한(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음)되어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 개정내용

- 생활임금 제한조항 삭제 (제5조제3항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### 3. 의견 제출

- 이 개정 조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일자리지원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(560-5802) 또는 Fax(560-2731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#### 4. 참고 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
-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### 1. 제안이유

- 생활임금 조례 조항 중 생활임금 상한액이 제한(최저임금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)되어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생활임금 제한조항 삭제(제5조제3항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췌 : “해당 없음”

##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다음연도”를 “다음 연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표시 한다”를 “표시한다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”을 “(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해당직위”를 “해당 직위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의 해촉)”을 “(위원의 위촉 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”을 “위촉 해제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개의”를 “회의를 시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회의사항”을 “회의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”을 “규정한 것 외에는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給)으로 표시 한다.

제7조(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,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·③ (생략)

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해촉)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생략)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(생략)

----- 표시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설치·구성 등)

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위원회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위원의 임기) -----  
----- 한 차례만 ---  
-----.  
----- 해당 직위-----  
-----.

제9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위촉 해제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 
----- 회의를 시작-  
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<p>⑤ 위원회는 <u>회의사항</u>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⑥·⑦ (생략)</p> <p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<u>정하지 아니한 사항</u>은 「근로기준법」, 「최저임금법」 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.</p>	<p>⑤ ----- <u>회의 사항</u>----- ----- -.</p> <p>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준용) ----- <u>규정한 것 외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 실·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실·과별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2017.4.17 ~ 5. 8. ○ 내 용 - 의견수렴	-	-	-
입 법 예 고			
협의개요	제 출 자	제출의견	검토내용
○ 기 간 . . . ~ . . . ○ 내 용 - 구보게재 - 인터넷	-	-	-

##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- 567호

「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. 4. 17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2017.3.6.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」가 개정(조례 제5772호)되어 조례 제20조제1항에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가축분뇨 수집의 처리비용 부담) 및 관련 별표를 삭제하고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」와 연계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「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변경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의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근거법령만 밝혀 연계되도록 함.

나. 「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별표 삭제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(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)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처리시설을 인천광역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 있으며,
- 현재 가축분뇨 배출자는 가축분뇨를 적법한 수집·운반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한 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「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별표 삭제

다.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중 제20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(2017.03.06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것에 맞춰 부칙 신설

- 부칙 : 이 조례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5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(참조 : 환경보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우편 또는 팩스

- 1) 주소 : (우 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서구청 환경보전과
- 2) 전화 : 032-560-4891
- 3) 팩스 : 032-560-2751

#### 4. 참고사항

○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(안)

##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「가축분뇨법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제5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조례로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.
-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자인 인천광역시에서 해당 비용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, 그동안 관련 조례인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」에 징수근거가 없어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용료를 징수하여 대납하여 왔으나,
- 2017.3.6.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」가 개정(조례 제5772호) 되어 조례 제20조제1항에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) 및 관련 별표를 삭제하고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」와 연계한 부칙을 신설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조 변경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의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근거법령만 밝혀 법 개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함.

나. 「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별표 삭제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(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)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처리시설을 인천광역시에서 설치 및 관리운영하고 있으며,
- 현재 가축분뇨 배출자는 가축분뇨를 적법한 수집·운반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한 후 시장원리에 따라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므로 「인천광역시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별표 삭제

다. 「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중 제20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(2017.03.06)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것에 맞춰 부칙 신설

- 부칙 : 이 조례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라. 기타 법령 용어 순화에 따라 자연스러운 말로 바꿈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췌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사육동물로써 소·돼지·말·닭·젓소, 로리, 양(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사슴, 메추리 및 개를”을 “사육동물을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개별법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존치함”을 “존치하는 것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8조 중 “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”를 “법 제53조”로 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축분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가축분	제1조(목적)	-----	-----
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	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		-----	-----
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	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		-----	-----
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<u>관하여</u>	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<u>관하여</u>		-----	----- <u>필요</u> -----
<u>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	<u>필요한</u>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		-----	-----
로 한다.	로 한다.		-----	-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	-----	-----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-----	-----
1.”가축”이란 「가축분뇨의 관	1.”가축”이란 「가축분뇨의 관	1.	-----	-----
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	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		-----	-----
”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	”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		-----	-----
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	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		-----	-----
른 <u>사육동물로써 소·돼지·말</u>	른 <u>사육동물로써 소·돼지·말</u>	<u>사육동물을</u>	-----	-----
<u>·닭·젓소, 로리, 양(염소 등</u>	<u>·닭·젓소, 로리, 양(염소 등</u>		-----	-----
<u>산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</u>	<u>산양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</u>		-----	-----
<u>사슴,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.</u>	<u>사슴,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.</u>		-----	-----
2. (생 략)	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-----	-----
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) ① (생	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) ① (생	제3조(가축사육의 제한) ① (현행	-----	-----
략)	략)	과 같음)	-----	-----
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	②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	②	-----	-----
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.	누구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.		-----	-----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	-----	-----
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		-----	-----

니하다.

1. · 2. (생 략)

3.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,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, 농·축산물 도매시장

4. ~ 6. (생 략)

③ (생 략)

④ 일부 기존 가축 사육지 및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⑤ (생 략)

제4조 (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)

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수집·운반업자”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개별법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 
-----  
존치하는 것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·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은 가축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수집·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·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, 축산업자가 스스로 수집·운반 시에는 처리비용 중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.

제8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구청장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른다.

제8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-----  
- 법 제53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## [별첨 6] 관계법령

□ **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**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가축"이란 소·돼지·말·닭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.

**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·축산업자의 책무)**

-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"시장·군수·구청장"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가축분뇨의 수집·운반·처리 및 비용 부담 등)**

- ①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직접 수집·운반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제1호의 가축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수집·운반업자"라 한다)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운반하게 할 수 있다.
- ⑤ 공공처리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,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□ **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**제2조(사육동물)**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"이란 젓소, 오리, 양(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, 이하 같다), 사슴,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.

## □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

### 제20조(분뇨처리시설 수수료 부과·징수 등)

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(하수처리장을 포함한다. 이하 "처리장"이라 한다)에 분뇨(오수처리시설·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, 가축분뇨를 포함한다)를 반입하는 자(분뇨배출자 및 분뇨수집·운반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분뇨반입자"라 한다)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5에서 정한 처리수수료(이하 "수수료"라 한다)를 징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-03-06>

[별표 5]

####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(제20조제1항 관련)

구 분	처 리 비 용		
분 뇨	1원/ℓ		
가축분뇨	허가시설	신고시설	그 밖의 시설
	8원/ℓ	6원/ℓ	2원/ℓ

비고

1. "허가시설"이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을 말한다.
2. "신고시설"이란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말한다.
3. "그 밖의 시설"이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.

### 부칙<2017-03-06 조례 제577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

2017년 4월 17일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14호

###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의 규정에”를 “제4조에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

같은 조 제7호 중 “공동주택간”을 “공동주택 간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건축과장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건축과장”으로, “사업관련 부서장”을 “사업 관련 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지원대상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에 따른다.  
제6조제3항 중 “지원대상자에 대하여”를 “지원대상자에게”로 한다.

제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
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95조제8항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. 다만,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같은 조 제2항 중 “우리 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”로, “차”를 “바로 다음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공동 주택관리규약”을 “공동주택 관리규약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지도 감독)”을 “(지도·감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지원대상자에 대하여”를 “지원대상자에게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